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3. 10. 31.
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8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9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2003. 10.31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토목과장 김길영)

#### 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농업.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하여 시도(市道)를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국도 점용과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구도(區道) 점용의 경우에도 국도 및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같은 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요율을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. 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1) 농업.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한 구도 점용의 경우에 국도 및 시도 점용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 조정함.(제3조 관련, 안 별표)

가) 농업 및 식물재배 : 0.005 → 0.01

나) 주 택 : 0.005 → 0.025

2) 점용물의 면적, 점용물의 길이등이 1㎡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점용료 부과시 이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0.5㎡ 이상 1㎡ 미만 또는 0.5m 이상 1m 미만의 경우에 이를 1㎡ 또는 1m로

### 산정함.(제3조 관련, 안 별표)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2003.7.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같이 농업·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하여 구도(區道)를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도 국도(國道) 점용과 같은 수준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제3조 관련 안 별표 제10호에서 농업 및 식물재배의 산정요율을 (점용면적 1㎡, 1년) 0.005에서 0.01로 상향조정하고, 주택의 산정요율은(점용면적 1㎡, 1년) 0.005에서 0.0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도(國道)· 시도(市道)의 점용료 산정요율과 일치시켜 구도(區道)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, 비고 3호에서는 점용면적, 점용물의 길이, 표시면적 등의 점용 단위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 (신봉현 위원장) : 점용료 부과 산정 요율을 농업 및 식물재배 100%, 주택 500%로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주민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?
- 답변요지 (김길영 토목과장) : 점용료 산정요율은 100~500% 인상하지만 실제 점용료 부과금액은 계수조정을 통해 수년 간(약9년)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금씩 인상됨.

#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·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하여 시도(市道)를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국도 점용과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구도(區道) 점용의 경우에도 국도 및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같은 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요율을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·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농업·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한 구도 점용의 경우에 국도 및 시도 점용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 조정함.(제3조 관련, 안 별표)
  - (1) 농업 및 식물재배 :  $0.005 \rightarrow 0.01$
  - (2) 주택 :  $0.005 \rightarrow 0.025$

- 나. 점용물의 면적, 점용물의 길이 등이  $1m^2$ 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점용료 부과시 이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 $0.5m^2$  이상  $1m^2$  미만 또는  $0.5m$  이상 1m 미만의 경우에 이를  $1m^2$  또는 1m로 산정함.(제3조 관련, 안 별표)

### 3. 근거법령

- 가. 도로법(2002.12.30 법률 제6841호) 제43조제2항
- 나. 도로법시행령(2003.6.30 대통령령 제18044호) 제26조의2 및 관련 별표2

### 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3.8.25~9.17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3.09.22)
- 다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관련, 별표 “점용료 산정기준” 제1호 전주·공중전화등 지상 시설물의 점용률의 종류란중 “공중전화”를 “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”으로 하고, 동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점용률의 종류	기준단위		점 용 료 (단위 : 원)
	점용 단위	기간 단위	
10.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·물건 및 시설	농업 및 식물 재배	점용면적 $1m^2$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	주 택	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
	기 타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제3조 관련, 별표 “점용료 산정기준” 하단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점용면적, 점용률의 길이, 표시면적 등이  $0.5m^2$  또는 0.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 $0.5m^2$  이상  $1m^2$  미만 또는 0.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 $1m^2$  또는 1m로 계산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점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)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				(별표)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			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 점 용 단 위	기 간 단 위	점 용 료 (단위: 원)		기준단위 점 용 단 위	점 용 료 (단위: 원)
1.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 설물	전주·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	1개	1년	1,350		—	—
	변압器, 무선전화기지국,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, 발 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, 고 통량검지기, 주차메타기, 우체통, 소화전, 모래함,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 사한 것.			2,000			
	공중전화			54,200			
	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			점 용 면 적 $1m^2$	1년		
2.~9. (생 략)				2.~9. (현행과 같음)			
10. 제1호 내지 제9 호외의 공작물·물건 및 시설	농업·주택 및 식물재배	점 용 면 적 $1m^2$	1년	토지가격 에 0.005를 곱한 금액		농업 및 식물 재배	토지가격에 0.01을 곱 한 금액
	기 타			토지가격 에 0.05 를 곱한 금액			
	기 타			토지가격 에 0.05 를 곱한 금액			
※ 비 고 1.~2. (생 략) 3. 점용면적, 점용물의 길이, 표시면적 등이 1 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 점용면적·길이·표시 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. 4.~12. (생 략)				※ 비 고 1.~2. (현행과 같음) 3. 점용면적, 점용물의 길이, 표시면적 등이 0.5 $m^2$ 또는 0.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.5 $m^2$ 이상 1 $m^2$ 미만 또는 0.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$m^2$ 또는 1m로 계산한다. 4.~12. (현행과 같음)			